

감사결과보고서

-연구개발[R&D] 사업 운영 실태-

- 감사기간: 2013.10.21. ~ 10.25. (예비감사: 5일간)
2013.10.28. ~ 10.30. (본 감사: 3일간)
- 감사인원: 3명
- 지적사항: 3건 (권고 1, 개선 2)

2013. 12.



청렴윤리부
대한지적공사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연구개발 사업은 국가의 핵심 경쟁력 분야이므로 공간정보 연구원이 “국가 공간정보 R&D를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으로서 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감사대상 기관: ○○○○○○○○
- 감사 조사범위: 2012.01.01.~2013.10.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

3. 감사기간 및 인원 등

- 예비감사: 2013.10.21.(월) ~ 2013.10.25.(금)(5일간)
- 본 감 사: 2013.10.28.(월) ~ 2013.10.30.(수)(3일간)
- 점검총괄 : 청렴윤리부장
 - 감사자: 청렴윤리부 차장 정덕기, 감사분소 차장 이호성, 과장 조미화

4. 감사 중점사항

- 안정된 연구성과 관리체계 운영 여부
- 연구과제의 선정, 수행, 평가, 성과 활용 등 사후관리 실태
- 연구개발 관련 규정(통제)의 적정성 점검

II. 감사처분현황

처 분 요 구 서

개 선

제 목 연구관리시스템 개선 추진

관 계 기 관 ○○○○○○○○

내 용

2012. 4. 9. ○○○○ ○○○에서는 연구관리시스템을 원활하게 활용하고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구관리시스템 개선 계획(안)”을 수립하여 내부방침 결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표 1. 시스템 개선추진 계획 현황>

구 분	개선내용 및 추진계획	비고
2012년 (1단계)	○ 추진일정: 2012. 4. ~ 5.(2개월간) ○ 소요예산: 30,000천 원 ○ 개선내용: 현 시스템 유지보수 단계로 개선 - 자료실 연구보고서, 지적지 등록 기능 추가	
2013년 (2단계)	○ 추진방법: 시스템 재구축 ○ 계획내용: - 인력 및 조직 등 업무규정 개편 선행 후 개선 - 연구원 운영규정에 의한 연구프로세스 개정 후 설계 - 연구관리시스템 개선 담당자 지정 운영	

최근 ○○○○ ○○○에서는 “국가 공간정보 R&D를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R&D 역량 강화’, ‘선도적 공간정보 정책개발 및 융·복합 기술개발 활성화’, ‘연구개발 분야 영역 확대로 R&D 수입창출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전략

과제를 도출하여 2025비전과 경영목표 달성은 물론 공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에서는 그동안 연구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 과제가 축적, 관리, 분석되어 지식정보로써 창조적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안정된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2. 1단계 유지보수 이후 2013. 10. 현재까지 연구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전략, 선정, 수행, 평가, 성과 활용 제고와 함께 연구자 중심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2단계 재구축 관련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사무분장에도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2. 예산운영계획(안) <경영관리부-570, 2012.2.21. 사장방침>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 및 사업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강화하여 그 목적 이외에는 사업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예산집행 취소, 사업종료 등에 의한 잔여 예산은 예산담당 부서에 수시로 반납할 수 있도록 지시되어 있으나,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목적으로 수립한 예산 30,000천 원을 2012.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2013.으로 이월한 것은 예산운영 계획(안)에 타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철저한 예산관리가 요구됩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연구관리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해당연도에 미집행한 예산은 반납하여 공사의 시급한 역점사업이나 재무구조 개선에 반납된 예산이 이바지 될 수 있도록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요구서

개 선

제 목 연구개발(R&D) 성과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개선

관 계 기 관 ○○○○○○○○

내 용

2009. ~ 2011. ○○○○ ○○○ 종합감사에서 <표 1>과 같이 “연구 성과의 활용과 사후관리 소홀”이 3년 동안 연속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표 1. 종합감사 지적내용>

처분년도	지적내용	처분사항	비고
2009	○ 연구 성과의 활용, 보완 및 사후 관리 미흡	주의	
2010	○ 연구 성과 사후관리 미흡	주의	
2011	○ 연구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사후관리 소홀	통보	
	○ 연구 성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소홀	권고	

「○○○○○ ○○○ 운영규정」 제12조(연구보고서 제출 등) 제①항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별지 3호 서식의 연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5조(연구성과의 활용 및 보완) 제①항에는 “○○○○○은 필요한 경우 관련 현업팀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와 제②항에는

“제1항에 따라 활용 팀으로 결정된 팀의 장(이하 “활용팀장”이라 한다)은 소속팀의 실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성과 활용 실적 결과를 알려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 ○○○은 종합감사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2012.에는 연구성과 활용과 보완을 통한 실적 관리와 함께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2012. 연구과제 공모와 수요조사에서 현업 팀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실제 적용 후 활용에 따른 성과를 검증하여 사후 관리 등이 되도록 해야 했으나 <표 2>와 같이 실적이 없습니다.

<표 2. 연구성과 활용실적 제출과 사후관리 현황>

연구과제건수 (수탁업무제외)	활용실적 제출 건수 (규정 별지 4호 서식)	사후 관리 건수 (활용법, 만족도, 보완 사항 등)	비 고
23건	0	0	구두 자료 제출 현황 사항

또한, <표 3>에서와 같이 해마다 ○○○에서 연구성과 전파를 위해 2010. ~ 2013. 까지 각 1회씩 4회, 매년 30명 정도 인원으로 총 11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각 지역 본부 및 지사 직원 3,428명을 현업 팀으로 본다면 전파를 위한 노력도 미흡(3.4%)합니다.

<표 3. R&D 전파교육 현황 >

교육년도	교육실시 횟수	교육 인원	교육 기간	비고
2010	1회	25명	3일	연수원
2011	1회	30명	3일	“
2012	1회	30명	3일	“
2013	1회	30명	3일	“

최근 ○○○○○○부에서는 R&D 사업 종료 후 성과 관리와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하는 ‘추적평가’를 올해 최초로 시범실시 한다고 발표 (2013.9.16.)하였습니다. 추적평가는 국가연구개발 종료 후 일정 기간 (3년~5년) 동안 연구성과 관리체계, 활용·확산 및 파급효과 등을 추적해 성과 활용 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조치할 사항

○○○○○○○○○은 R&D 사업 완료 후 성과 관리와 활용 · 확산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수요조사 시기, 활용계획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도록 규정과 지침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권 고

제 목 위탁 연구기관 선정방법 다양화 추진

관 계 기 관 ○○○○○○○○

내 용

2012. ~ 2013. (2년) ○○○○ ○○○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중 부분방식과 전체방식으로 위탁한 연구과제 현황은 <표 1>과 같습니다.

<표 1. 연구과제 위탁 현황>

(단위: 건수)

구분	연구과제	위탁 연구과제 현황			비고
		소계	부분 위탁현황	전체 위탁현황	
계	100	60	32	28	
2012년	36	18	15	3	
2013년	64	42	17	25	

○○○○ ○○○에서 수행한 위탁과제 중 연구기관 선정방법에 따른 계약 현황은 <표 2>와 같습니다.

<표 2. 연구기관 선정 계약방법>

(단위: 건수)

구분	위탁 연구기관 선정방법					비고
	소계	협상에 의한 계약(규칙제41조)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규칙제19조 1항,2항)	수위계약 (규칙제25조 ~30조)	일반경쟁입찰 (규칙제40조 2항)	
계	60	44	10	5	1	
2012년	18	9	9			
2013년	42	35	1	5	1	

「○○○○○○○○운영규정」 제7조의 2(연구의 위탁)와 「위탁연구업무지침」 제4조(위탁연구기관 및 위탁연구책임자의 선정)에 따르면 연구원은 위탁 연구과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대상 과제를 공고하고 과제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선정위원회 구성으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수한 위탁 연구기관 및 위탁연구 책임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위탁연구업무지침」 제5조(계약체결)에는 “선정된 위탁연구기관과 협의 하여 과제 내용을 확인하고 위탁연구비 산출내역을 최종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2. ~ 2013. 10. 현재 ○○○○ ○○○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내역을 보면 총 100건 중 60건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위탁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분야 영역 확대에 비례하여 위탁 연구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탁 연구기관 선정 현황을 보면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1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①항에 따른 계약체결이 44건으로 73.3%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갈수록 증가하는 위탁 연구과제에 비해 위탁기관 선정 방식이 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 ○○○의 위탁과제 특성상 전문성, 기술성을 보유한 우수한 위탁기관이 연구를 수행하도록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표 3>과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된 2013년 위탁 과제 중 「공간정보」 분야는 최근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급상승으로 많은 연구기관이 다양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 및

계약절차의 공개를 통한 부정행위 방지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 입찰계약 방법이 우선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 3. 일반경쟁입찰 가능 연구과제 현황>

위탁연구과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수행기관	집행예산 (천원)	비고
범죄 공간정보 활용 위치 추적	○○대학교 산학협력단	51,817	정책
공간정보산업 해외원조사업 활용 활성화 전략 연구	○○○○○○대학교 산학협력단	43,181	정책
공간정보 취득용 GNSS 통합 디바이스 개발연구	(주)○○○○○	48,793	정책
공간정보 정책기관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사)○○○○○○	57,273	수시
국가 국토정보 관련 산업 진흥 육성방안 연구	○○○○○○○	57,100	수시
국토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촉진을 위한 추진 전략 수립	○○○	112,273	수시

조치할 사항

○○○○○○○○○은 위탁과제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과제별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정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